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은퇴 설계의 성공적인 시작,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이 함께합니다.

01. 살아있는 동안 평생 노후소득 보장

- 소득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 노후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단,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1.25%/12를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02. 미국 달러로 정해진 금액 보장

-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달러로 노후소득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미래의 달러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노후소득을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유학자금 및 해외여행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는 노후소득 인출을 통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을 통하여 금리와 펀드수익률에 관계없이 가입당시 정해진 지급률과 노후소득 인상률로 계산된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단,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보증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3.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춘 미국 채권 투자

- 미국 국채 및 다양한 종류의 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04. 거치할수록 더 커지는 노후소득보증금액

- 거치시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연복리 5%로 증가하므로 더 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05.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립금 활용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하면 연금개시 전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의료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가장 좋은 생명보험사,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연맹은 매년 회사별 안정성과 소비자지향성, 건전성, 수익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좋은 생명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좋은 생명보험사'에 2010년부터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이 고객님의 노후소득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 노후소득보증금액 예시

55세 여자,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4.00%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2,000달러/년

10년
경과 후

×

노후소득 인상률
연복리 5%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3,257.79달러/년

**가입 후 10년 경과 후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할 경우 매년 3,257.79달러를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 미리보기는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하신 경우를 예시한 것입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위 예시에서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미리보기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 가입나이, 일시납보험료,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 등에 따라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은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 ※ 중도해지시 노후소득은 보증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 또한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상품안내

가입안내

- 1. 보험종류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 2.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노후소득인출기간(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3. 보험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입나이	40세 ~ 75세	노후소득인출개시나이	45세 ~ 84세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연금지급개시나이	85세
납입보험료 한도	30,000달러 이상		

-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5,000,000달러까지 가입가능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운용, 노후소득 보증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애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달러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에 고도재해장애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1%/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 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0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사망적립금이 0이 된 이후부터는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을 더 이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류	설명	금액
노후소득보증금액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매 보험연도마다 노후소득인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로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 노후소득인출시 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단, 5년까지 보증지급)
노후소득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

- ※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 연금적립금으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계약체결시점에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 노후소득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1.25%/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02

상품특징

용어 설명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남/여 동일)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40세	3.40%	50세	3.80%	60세	4.20%	70세	4.60%
41세	3.44%	51세	3.84%	61세	4.24%	71세	4.64%
42세	3.48%	52세	3.88%	62세	4.28%	72세	4.68%
43세	3.52%	53세	3.92%	63세	4.32%	73세	4.72%
44세	3.56%	54세	3.96%	64세	4.36%	74세	4.76%
45세	3.60%	55세	4.00%	65세	4.40%	75세	4.80%
46세	3.64%	56세	4.04%	66세	4.44%		
47세	3.68%	57세	4.08%	67세	4.48%		
48세	3.72%	58세	4.12%	68세	4.52%		
49세	3.76%	59세	4.16%	69세	4.56%		

· **노후소득 인상률** : 연복리 5%

· **노후소득인출기간** :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노후소득인출개시** :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적립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된 날(계약일 이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건강진단 등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된 경우에는 승낙일부터 가능합니다.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 일시납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노후소득보증금액** :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 : 노후소득보증금액에서 해당 보험연도의 누적 노후소득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마다 노후소득인출개시시 결정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설정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또한,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 보증 / 노후소득 보증비용** : 노후소득 보증이란 노후소득인출,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노후소득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청약철회기간 중 상품개정으로 인해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청약시점과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비교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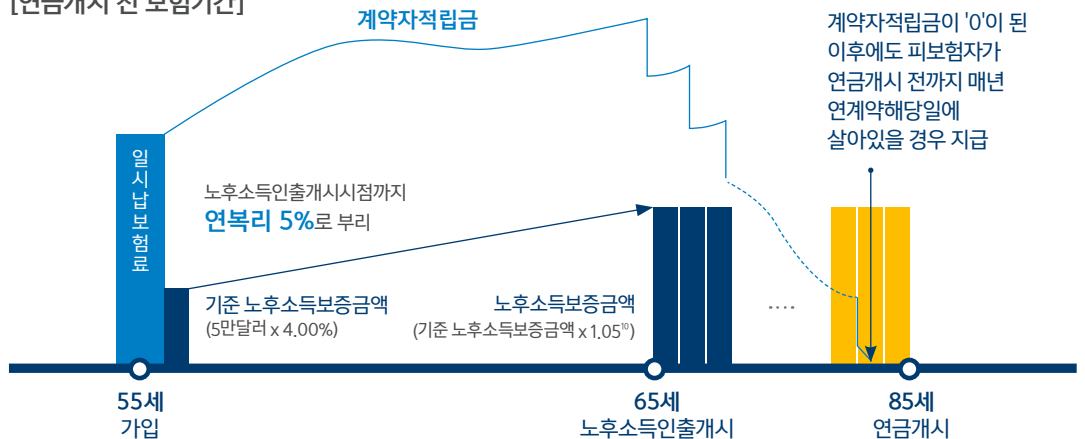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 모두 높아진 경우
- 둘 중 하나는 높아지고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경우

노후소득인출

- 계약자는 특별계정 투입일 이후 연금개시 전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노후소득인출은 45세 이후 영업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연계약해당일 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인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원하는 금액을 연간 횟수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감소됩니다.
 - ※ 노후소득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남아있고(노후소득보증금액을 전부 인출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가 도래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의 노후소득보증금액에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더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이월되지 않음)
- 노후소득인출시 노후소득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고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일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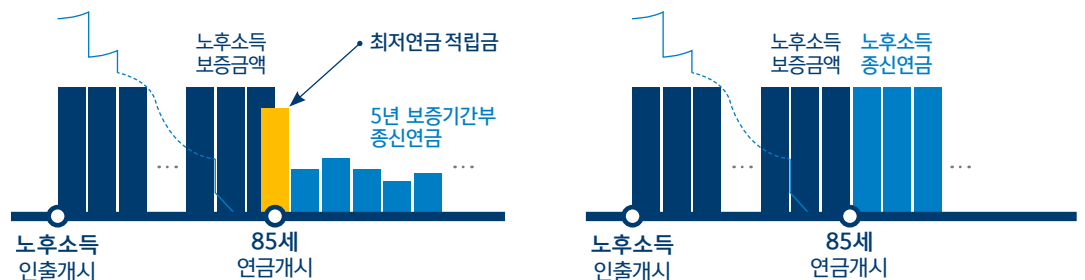
가입 예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예시기준 : 55세 여자,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선택시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선택시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02

상품특징

연금지급형태

이 보험의 연금지급개시일은 85세 연계약해당일입니다.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일시납보험료의 5%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계약체결시점에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정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노후소득종신연금은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을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하여 계산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해당 보험연도의 노후소득종신연금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원화환산납입 서비스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은 계약일의 전일로 합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 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달력: 7월 1일(영업일), 7월 2일(영업일), 7월 3일(공휴일), 7월 4일(영업일)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 일 때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의 1달러=1,120원을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 7월 4일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을 일시납보험료 100,000달러로 가입(계약)하였을 때, 환산기준일인 계약일의 전일(7월 3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2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000달러 * 1,120원 = 1억,120만원을 주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철회 또는 취소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가입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예시] 7월4일(계약일)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을 일시납 보험료 1억 1,200만원(100,000달러)으로 가입(계약)하고, 7월 29일 철회

가입(계약)시 납입한 원화 1억 1,200만원(원화로 납입시) 또는 100,000달러(미화로 납입시)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반환

원화환산지급 서비스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주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및 사망시 지급금 : 청구일의 전일
2. 연금액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3. 인출금 :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전일
4. 해지환급금 : 기준가격 적용일의 전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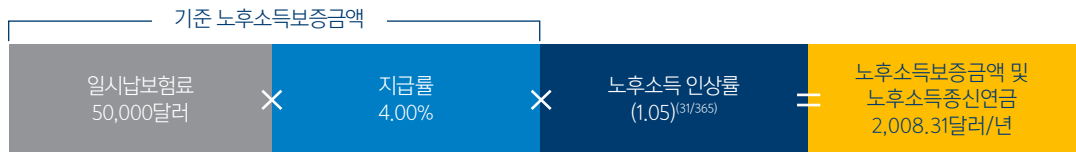
02

상품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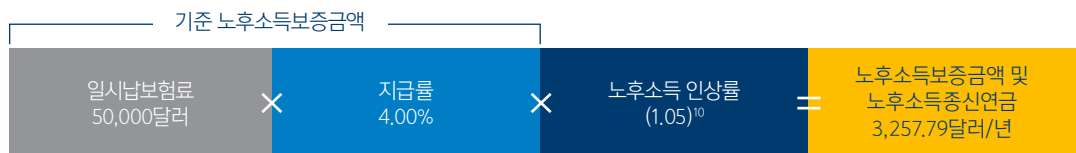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계산 예시

예시기준 :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남/여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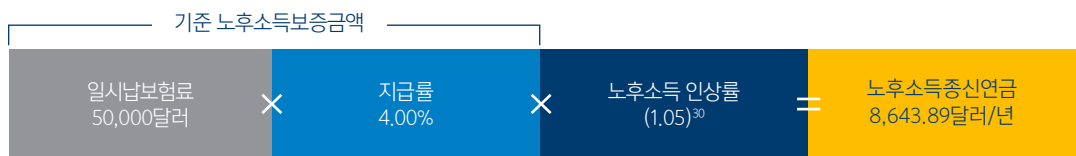
1) 특별계정 투입일(계약일 이후 31일째 되는 날)에 노후소득인출개시시(1년을 365일로 가정시)



2) 65세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인출개시시



3) 85세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예시는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위 예시에서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는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란 노후소득인출기간 중 계약자가 직접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인출하는 대신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1, 3, 6, 12개월)에 따라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자동적으로 인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동지급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자동지급금액	노후소득보증금액 ÷ 12	노후소득보증금액 ÷ 4	노후소득보증금액 ÷ 2	노후소득보증금액

노후소득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즉,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로 연 4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로 인하여 5회분부터의 자동지급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이 감소되며, 자동지급금액은 변경된 노후소득보증금액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 개시시점부터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료일 이전 2영업일까지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 변경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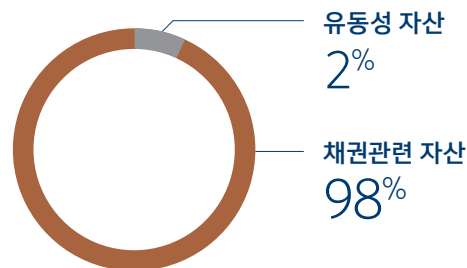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계약 체결시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를 100%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63%

운영보수	0.33%	투자일임보수	0.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등)
유동성 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계약자적립금 인출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노후소득중신연금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계약자적립금 인출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단, 고도장해보장을 위한 준비금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기간 중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0이 된 이후에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개시후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02

상품특징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노후소득보증금액, 최저연금적립금(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은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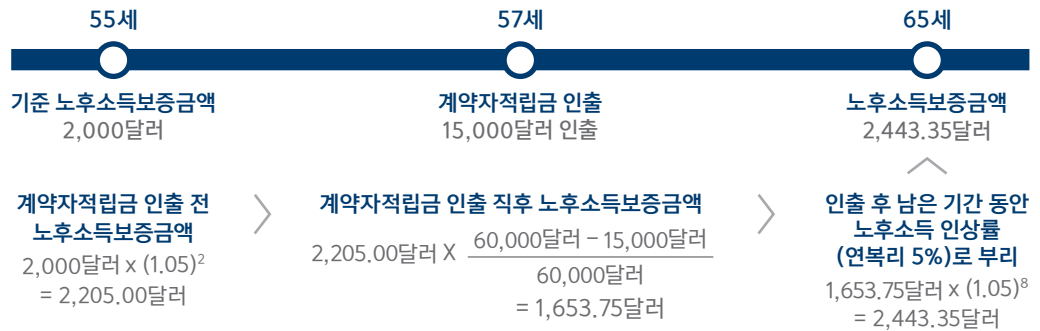
계약자적립금 인출에 따른 노후소득 변경 예시

예시 기준 : 55세 여자,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10년 후), 기준 노후소득보증금액 2,000달러

1) 노후소득인출 개시 전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57세 연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 60,000달러 가정

같은 날 15,000달러(인출수수료포함) 계약자적립금 인출 후,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시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은?



2) 노후소득인출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70세 연계약해당일에 1)에서 계산된 노후소득보증금액(2,443.35달러)을 전액 인출

노후소득인출 후 남은 계약자적립금 40,000달러

같은 날 8,000달러(인출수수료 포함) 계약자적립금 인출 후, 71세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은?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도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계산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 3,257.79달러/년,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단위 : 달러

경과 기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노후소득 보증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가정(순수익률:-2.35%)		2.50%가정(순수익률:1.15%)		3.75%가정(순수익률:2.40%)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8,389.32	-	50,000.00	47,266.51	94%	48,941.38	97%	49,539.54	99%
3년	47,889.28	-	50,000.00	44,603.49	89%	49,542.46	99%	51,390.67	102%
5년	47,389.24	-	50,000.00	42,063.03	84%	50,157.15	100%	53,330.15	106%
10년	46,139.14	-	50,000.00	36,210.56	72%	51,754.29	103%	58,592.30	117%
15년	28,844.44	16,288.95	33,711.05	16,056.12	32%	36,845.88	73%	47,282.12	94%
20년	11,957.00	32,577.90	17,422.10	3.15	0%	21,499.49	42%	35,007.00	70%
25년	-	48,866.85	1,133.15	2.17	0%	5,628.57	11%	21,585.58	43%
30년	-	65,155.80	-	-	0%	-	0%	6,617.59	13%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일시납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노후소득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단, 상기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직전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노후소득보증금액 누계는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매년 인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의 누계입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에서 해지환급금은 65세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전액 인출을 가정한 예시이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이미 지급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노후소득종신연금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연금지급개시전 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위 표의 경과년도 1년에 해당하는 예시는 55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경과년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3,257.79달러/년,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단위 : 달러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가정)	-1.00%가정(순수익률:-2.35%)			2.50%가정(순수익률:1.15%)			3.75%가정(순수익률:2.40%)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2,500.00			2,500.00			6,617.59		
예시이율(연복리)	1.00%	2.50%	2.50%	1.00%	2.50%	2.50%	1.00%	2.50%	2.50%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189.35	210.69	210.69	189.35	210.69	210.69	501.23	557.71	557.71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단, 2019년 12월 현재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및 2019년 12월 현재의 공시이율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시이율 변동 시 연금액도 변경합니다.
- ※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적립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0% 최저보증)로 하여 매 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 3,257.79달러/년

-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수익률,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판매자격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co.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5.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계약대출 및 감액에 대한 안내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보험계약대출 및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10.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1.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직립금, 최저연금적립금, 노후소득보충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 **당신의 삶을** 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1912001-1-3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707호 (2019.12.10)
인쇄일자. 2020. 01. 0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은퇴 설계의 성공적인 시작,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이 함께합니다.

01. 살아있는 동안 평생 노후소득 보장

- 소득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평생 노후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단, 아래와 같이 노후소득보증비용을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5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85%/12(가입 후 5년간 차감)
7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75%/12(가입 후 7년간 차감)
10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65%/12(가입 후 7년간 차감)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02. 미국 달러로 정해진 금액 보장

-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달러로 노후소득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미래의 달러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노후소득을 달러로 지급받으므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유학자금 및 해외여행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는 노후소득 인출을 통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을 통하여 금리와 펀드수익률에 관계없이 가입당시 정해진 지급률과 노후소득 인상률로 계산된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단,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3.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춘 미국 채권 투자

- 미국 국채 및 다양한 종류의 회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04. 거치할수록 연복리 5%로 더 커지는 노후소득보증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완료 이후에도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까지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노후소득 인상률(연복리 5%)을 적용하여 증가됨에 따라 더 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05.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립금 활용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하면 연금개시 전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의료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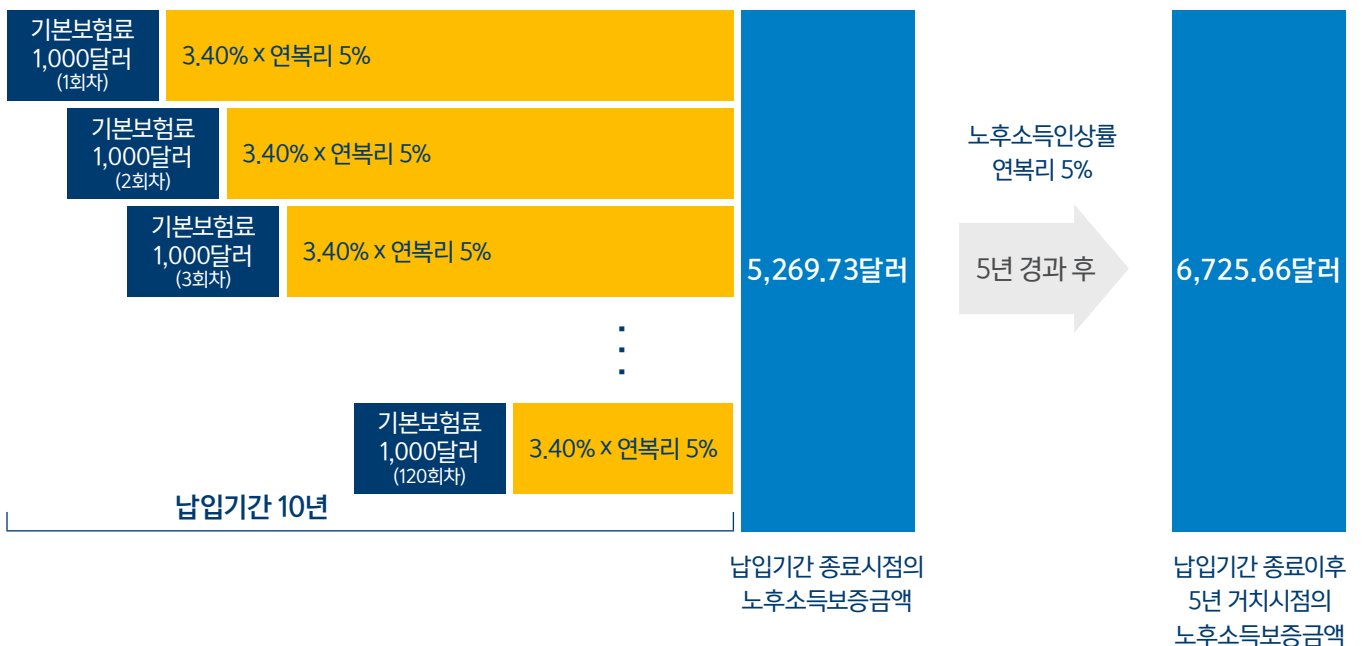
06.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이 고객님의 노후소득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 노후소득보증금액 예시

50세 여자, 기본보험료 1,000달러, 10년납, 가입나이별 지급률 3.40%, 노후소득 인상률 5%,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납입기간 종료 후 5년 거치 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6,725.66달러/년

가입 후 15년 경과 후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할 경우 매년 6,725.66달러를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매월의 계약해당일에 납입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본보험료 납입일자가 매월의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예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기 미리보기는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하신 경우를 예시한 것입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위 예시에서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미리보기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 등에 따라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은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 ※ 중도해지시 노후소득은 보증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 또한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상품안내

가입안내

- 1. 보험종류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 2.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노후소득인출기간(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3. 보험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입나이	40세 ~ 70세		노후소득인출 개시나이	45세 ~ 84세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금지급개시나이	85세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한도	5년납	500달러 이상		
	7년납	400달러 이상		
	10년납	300달러 이상		

- ※ 피보험자 1인당 총납입보험료 기준 최고 5,000,000달러까지 가입가능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운용, 노후소득 보증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이 계약과관련 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 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1구좌 기준)
고도재해 장애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달러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지급되며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 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인출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거나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재계산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0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사망적립금이 0이 된 이후부터는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을 더 이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류	설명	금액
노후소득 보증금액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금액으로, 매 보험연도마다 노후소득인출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	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하고,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들을 합한 금액

- ※ 노후소득인출시 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단, 노후소득인출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단, 5년까지 보증지급)
노후소득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하고,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들을 합한 금액

- ※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 연금적립금으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기본보험료 × 보험료납입기간 × 12 × 5%”(단, 보험료의 감액시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 아래와 같이 노후소득보증비용을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5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85%/12(가입 후 5년간 차감)
7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75%/12(가입 후 7년간 차감)
10년납	특별계정적립금의 0.85%/12(보험기간 중 차감) + 보험료총액의 0.65%/12(가입 후 7년간 차감)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02

상품특징

용어 설명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남/여 동일)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가입나이	지급률
40세	2.40%	51세	3.48%	61세	4.40%
41세	2.50%	52세	3.56%	62세	4.50%
42세	2.60%	53세	3.64%	63세	4.60%
43세	2.70%	54세	3.72%	64세	4.70%
44세	2.80%	55세	3.80%	65세	4.80%
45세	2.90%	56세	3.90%	66세	4.92%
46세	3.00%	57세	4.00%	67세	5.04%
47세	3.10%	58세	4.10%	68세	5.16%
48세	3.20%	59세	4.20%	69세	5.28%
49세	3.30%	60세	4.30%	70세	5.40%
50세	3.40%				

- **노후소득 인상률** : 연복리 5%
- **노후소득인출기간** :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노후소득인출개시**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후소득보증금액** :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매 보험년도마다 보장하는 금액으로, 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하고, 노후소득 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들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 : 노후소득보증금액에서 해당 보험연도의 누적 노후소득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은 매년 연계약해당일마다 노후소득인출개시시 결정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설정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기본보험료 × 보험료납입기간 × 12 × 5%”(단, 보험료의 감액시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거나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단,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 보증 / 노후소득 보증비용** : 노후소득 보증이란 노후소득인출,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며, 노후소득 보증비용이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노후소득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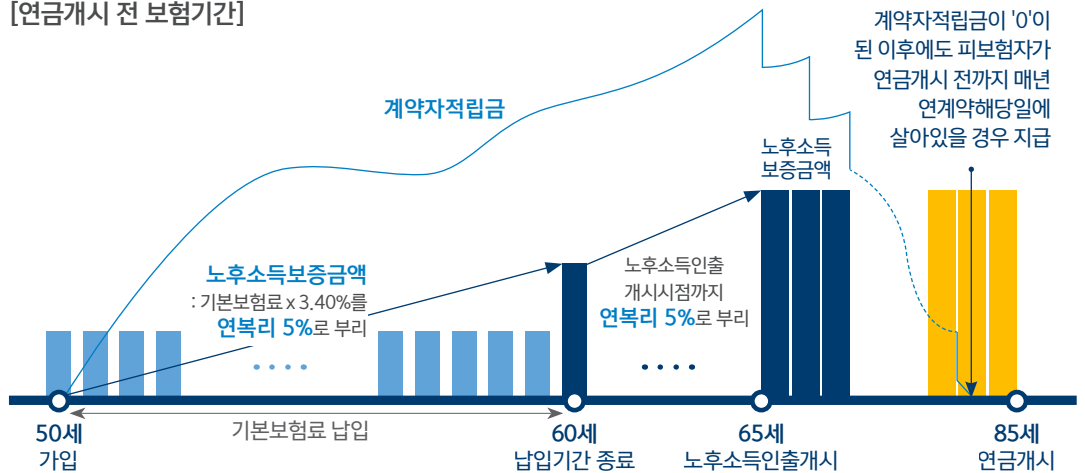
※ 청약철회기간 중 상품개정으로 인해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청약시점과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비교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 및 노후소득 인상률 모두 높아진 경우
 - 둘 중 하나는 높아지고 나머지 하나는 동일한 경우

노후소득인출

-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노후소득인출은 영업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연계약해당일 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인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원하는 금액을 연간 횟수 한도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은 감소됩니다.
 - ※ 노후소득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남아있고(노후소득보증금액을 전부 인출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가 도래한 경우, 다음 보험연도의 노후소득보증금액에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더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이월되지 않음)
- 노후소득인출시 노후소득인출금액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고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일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연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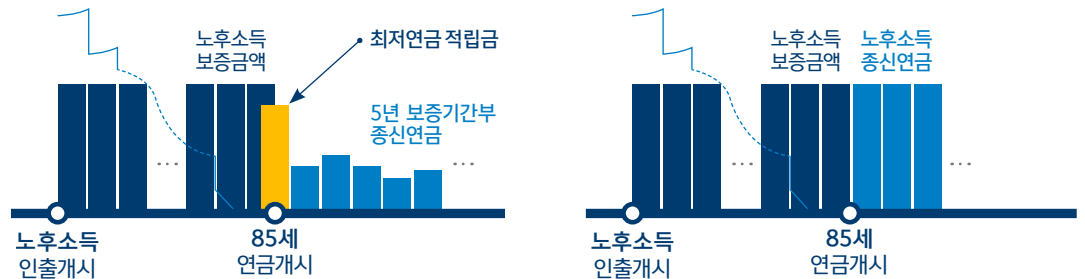
가입 예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예시기준 : 50세 여자, 기본보험료 1,000달러, 10년납,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선택시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은 연금지급 전 보험기간의 특별 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선택시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02

상품특징

연금지급형태

이 보험의 연금지급개시일은 85세 연계약해당일입니다.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는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지급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으로 연금적립금보증금액과 “기본보험료 × 보험료납입기간 × 12 × 5%”(단, 보험료의 감액시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저보증합니다.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노후소득인출 및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거나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단, 연금적립금보증금액이 0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노후소득종신연금

노후소득종신연금은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단,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 가입나이별 지급률을 곱하고,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상률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들을 합한 금액을 노후소득종신연금액으로 지급하며,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시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해당 보험연도의 노후소득종신연금만큼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적립금이 0이 된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 계산 예시

예시기준 : 50세, 10년납, 기본보험료 1,000달러,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남/여 동일)

1) 60세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인출 개시시 (납입기간종료 시점)



2) 65세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인출 개시시 (납입기간종료 이후 5년 거치시)



3) 85세 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노후소득 인상률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부터 계약자가 최초로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한 날(연금지급개시일까지 노후소득인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까지 적용합니다.
- ※ 노후소득 인상률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 ※ 상기 예시는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위 예시에서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예시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매월의 계약해당일에 납입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본보험료 납입일자가 매월의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02

상품특징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란 노후소득인출기간 중 계약자가 직접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인출하는 대신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1, 3, 6, 12개월)에 따라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자동적으로 인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동지급금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자동지급금액	노후소득보증금액 ÷ 12	노후소득보증금액 ÷ 4	노후소득보증금액 ÷ 2	노후소득보증금액

노후소득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으며,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즉,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로 연 4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로 인하여 5회분 부터의 자동지급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차년도 이후 노후소득보증금액이 감소되며, 자동지급금액은 변경된 노후소득보증금액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기간 동안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노후소득인출 개시시점부터 노후소득인출기간 종료일 이전 2영업일까지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노후소득 자동지급서비스를 신청, 변경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노후소득중신연금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계약자적립금 인출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기간 중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잔여 노후소득보증금액이 0이 된 이후에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 노후소득인출 개시후 매년 연계약해당일 이전 2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노후소득보증금액, 최저연금적립금(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중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중신연금(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중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은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0세, 10년납, 기본보험료 1,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 6,725.66달러/년,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단위 : 달러

경과 기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노후소득 보증금액 누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 가정)					
				-1.00%가정(순수익률:-1.92%)		2.50%가정(순수익률:1.58%)		3.75%가정(순수익률:2.83%)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989.48	-	12,000.00	6,880.85	57.3%	7,072.74	58.9%	7,140.78	59.5%
3년	32,968.44	-	36,000.00	27,588.22	76.6%	29,222.87	81.1%	29,820.88	82.8%
5년	54,947.40	-	60,000.00	47,553.92	79.2%	52,036.10	86.7%	53,727.61	89.5%
10년	109,894.80	-	120,000.00	95,065.16	79.2%	112,894.16	94.0%	120,158.88	100.1%
15년	109,683.00	-	120,000.00	85,708.28	71.4%	121,156.77	100.9%	137,032.09	114.1%
20년	75,842.90	33,628.30	86,371.70	45,593.69	37.9%	94,910.52	79.0%	119,857.76	99.8%
25년	42,003.40	67,256.60	52,743.40	9,343.07	7.7%	66,692.86	55.5%	100,239.96	83.5%
30년	8,163.90	100,884.90	19,115.10	-	0.0%	36,355.03	30.2%	77,830.31	64.8%
35년	-	134,513.20	-	-	0.0%	3,758.91	3.1%	52,354.91	43.6%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예시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매월의 계약해당일에 납입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본보험료 납입일자가 매월의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노후소득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단, 상기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는,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직전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노후소득보증금액 누계는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소득인출개시시점부터 매년 인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의 누계입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인출 및 노후소득 종신연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된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에서 해지환급금은 65세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노후소득보증금액의 전액 인출을 가정한 예시이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대비 해지 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이미 지급된 노후소득보증금액과 노후소득종신연금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위 표의 경과년도 1년에 해당하는 예시는 50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경과년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상품특징

연금액 예시

예시기준 : 여자 50세, 10년납, 기본보험료 1,000달러, 65세 노후소득인출개시, 85세 연금지급개시,
노후소득보증금액 : 6,725.66달러/년,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시)

단위 : 달러

특별계정수익률(연복리가정)	-1.00%가정(순수익률:-1.92%)			2.50%가정(순수익률:1.58%)			3.75%가정(순수익률:2.83%)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6,000.00			6,000.00			52,354.91		
예시아율(연복리)	1.00%	2.50%	2.50%	1.00%	2.50%	2.50%	1.00%	2.50%	2.50%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449.14	500.23	500.23	449.14	500.23	500.23	3,919.10	4,364.94	4,364.94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단, 2019년 12월 현재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및 2019년 12월 현재의 공시이율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시이율 변동 시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적립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0% 최저보증)로 하여 매 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 상기 예시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매월의 계약해당일에 납입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본보험료 납입일자가 매월의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상기 예시액은 세전금액 기준이며,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종신연금(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시) : 6,725.66달러/년

- ※ 노후소득종신연금은 특별계정수익률,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 상기 예시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매월의 계약해당일에 납입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본보험료 납입일자가 매월의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는 노후소득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없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예시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화환산납입 서비스특약I (의무부가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가입시 의무적으로 부가됩니다.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한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하며,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납입형태는 '납입일-제1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제1회 보험료	계약일 - 제1영업일
	주계약 기본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주계약 기본보험료(자동이체 이외)	납입일 - 제1영업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이고,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23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5원 일 때,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7월 2일 1달러=1,120원, 7월 4일 1달러=1,125원을 각 해당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납입기준환율(1달러)	1,130원	1,120원	-	1,125원	1,115원

- 주계약을 7월 4일에 가입(계약),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제1회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계약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제1회 보험료로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이외),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환산기준일은 '납입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5원 = 112,500원을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등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납입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02

상품특징

원화환산지급 서비스특약 (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주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및 사망시 지급금 : 청구일의 전일
2. 연금액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3. 인출금 :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전일
4. 해지환급금 : 기준가격 적용일의 전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의 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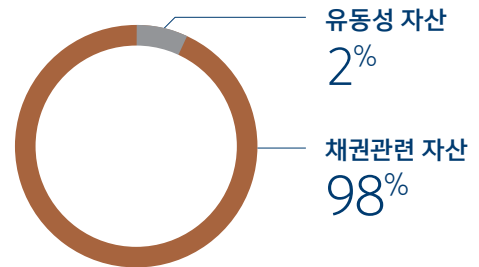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은 계약 체결시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를 100%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63%

운영보수	0.33%	투자일임보수	0.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등)
유동성 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의 판매자격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중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co.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5.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0.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직립금, 최저연금적립금, 노후소득보증금액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 **당신의 삶을** 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1912001-1-5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706호 (2019.12.10)
인쇄일자. 2020. 01. 01